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박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1. 제안이유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안 제4조)
- 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6조)
- 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안 제7조)

3. 관련법령

- 「예술인 복지법」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군포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소득 기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한다.

②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방법은 예술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 활동 증명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장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